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거비용제한액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가산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0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선거비용제한액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가산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선거비용제한액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가산 (안 제121조제3항)

개정안은 선거사무장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② (생략) ③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산재보험료 및 선거사무장등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u> 1. 2. (현행과 같음) 3. <u>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u>

④ (생략)	<u>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u>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선거사무소는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함.¹⁾

고용보험 보험료는 ‘후보자 부담분’과 ‘선거사무관계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지며, 후보자는 후보자 부담분과 선거사무관계자 부담분을 더한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참조),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총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반면, 산재보험 보험료는 전액 후보자 부담분으로만 구성되며, 정치자금 실무상 모두 선거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산재·고용보험료 부담 구조>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선거사무관계자)	사업자 부담 (후보자)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1/2 부담	· (실업급여) 1/2 부담 · (고용안정등) 전액 부담	사업자 전액 부담
지출 과목	선거비용 (수당에 포함)	선거비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료 후보자 부담분과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격 및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만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관련 내용이 입법에 반영된 바 있음.²⁾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2)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공직선거법개선소위원회(2022. 4. 15.)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투·개표사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데 이견이 없었으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됨.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선거비용제한액이 인상될 경우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증가하여 그만큼 당선인 등에게 추후 지급될 선거보전금도 증가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4억 2,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합 계	연평균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비용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 (안 제121조제3항)	-	856	312	259	-	1,427	714

주: 1.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비용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안 제121조제3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각 공직선거별로 직전 선거 시 선거사무장 등의 인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산재보험료 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할지 여부는 정치자금실무상 후보자(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보전되는 선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선거비용제한액 증가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